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79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고동진 · 김대식 · 김용태
강명구 · 김도읍 · 윤한홍
이달희 · 안철수 · 이상휘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증진과 연결시키는 광고와 같이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판촉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

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해당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을”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광고한 자”를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해당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③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⑤ -----제4항----- -----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u>광고한 자</u>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5. ~ 8. (생략) ② ~ ⑤ (생략)	----- ----- ----- -----. ⑥ 제4항----- ----- ----- -----. 제29조(과태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u>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한 자</u> 4. 제10조제4항----- ----- -----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